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5. 10. 23.(목)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25. 권영애 의원 외 11명 빌의 (의안번호 519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【2025. 10. 21. 상정 · 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권영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가).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). 성북구의회 및 성북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적이 있어 표창 등을 수여시,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음(안 제8조)
- 다). 표창의 취소(안 제15조)

다. 참고사항

- 가)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). 예산조치: 필요시 조치
- 다)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)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

가.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

- 포상제외자 : 부적절한 자(성범죄, 음주운전 등)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 마련
- 포상 취소 및 환수 :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

나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

개정 조항	주요 내용	상세 검토	비고
제2조 (표창대상)	표창 대상을 구민, 학생, 외국인, 단체 및 기관, 의회 및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화.		공무원을 표창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9조 표창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
제8조 (표창의 방 법 및 부상)	제2조제1항제5호(공무원)에게 표창 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	공무원의 직무 유공 표창 및 부상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.	
제15조 (표창의 취	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수여한 표창을 취	현행 조례에 없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,	

소) (신설)	소하여야 한다. 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.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	취소 사유에 성범죄 ·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명시하였음	
	②표창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·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	취소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되, 상장·감사장의 취소에 대한 심사 생략은 신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.	
	③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, 패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또는 상패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		부상 등의 환수를 의무화하여 포상 취소 및 환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함.

다. 종합의견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. 특히, 현행 조례상 미비했던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취소 및 부상 등의 환수 규정(제15조)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화('취소하여야 한다', '환수하여야 한다')함으로써, 포상 제도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할 것으로 판단됨. 주요 개선 효과로 성범죄,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표창이 명예롭고 가치 있게 유지될 수 있음. 또한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를 재량이 아닌 의무(취소/환수하여야 한다)로 규정하여 소극 행정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(목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25. 소형준 의원 외 5명 발의 (의안번호 520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【2025. 10. 21. 상정 · 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소형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「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에 있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).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 사항을 개정하고 각 호를 신설 함(안 제7조제2항)
- 나). 경고 또는 사과 징계에 대한 지급제한 사항을 신설 함(안 제7조제3항)

다. 참고사항

- 가)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)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)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라)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

가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

조문	현 행	개 정 안	주요 개정 사유
제 7 조 제 2 항	(출석정지 징계 시 지급 제한 규정 존재)	(본문)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 (각호 및 단서)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 (총 3호 신설: 회의 질서 문란 행위, 의장/위원장 석 점거, 출입 방해 등)	회의 방해 및 질서문란에 대한 징계시 강화된 지급 제한 근거 마련
제 7 조 제 3 항 (신설)		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	국민권익위 권고 반영. 경징계(경고/사과)에 대해서도 의정비 50% 감액 및 환수 근거 신설.
제 7 조 제 4 항 (개정)	(종전 제3항)	제1항의 공소가 무죄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.	신설된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 조항의 정합성 확보.
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 있으며,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제도적 타당성이 매우 높음
- 현행 징계 유형 중 가장 낮은 단계인 '경고'나 '사과'를 받은 의원에 대해 실질적인 재정적 불이익(50% 감액 및 환수)을 부과함으로써, 의원들의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
- 징계로 인한 의정 활동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전액 지급하는 예산 낭비 요소를 해소하고,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의 목적 적합성을 높임
- 징계 의결 이후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항([제7조제3항] 감액분 을 환수한다)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엄정성을 기할 수 있음

나. 종합 결론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반영하는 것으로, 제도적 타당성, 적법성 및 필요성이 매우 높음.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·의결하여 성북구 의정비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붙임 1.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내용 1부

2.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요약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제안

□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

- 국민권익위원회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.

□ 2022년 권고사항의 내용 [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]

-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의결하여 제도 개선안을 권고함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갑질·성 비위, 겸직·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함.
- 실태조사 결과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, 이에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함.
- 권고 내용에는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의 전반 감액,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3개월간 미지급, 경고·사과 징계시 2개월간 절반 감액 등이 포함됨.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2 - 859호

의 안 명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

내상기관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의회

의 결 일 2022. 12. 19.

주 문

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의회의 장에게 권고한다.

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(지방의회)

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

- 본회의·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·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

구분	의정비 지급 제한(예시)
출석정지	
▶ 일반적인 경우	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/2 감액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공개회의 경고·사과	
▶ 질서유지 의무 위반	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/2 감액 (⇒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)

〈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요약 (2022. 12. 22.(목) 11:00) 〉

-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, 제7기에서 60명,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
 - 징계사유를 보면, △ 갑질 행위·성추행 등 성 비위(28명, 14.7%) △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(20명, 10.5%) △ 음주·무면허 운전(16명, 8.4%)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.
 - 징계유형으로는 △ 출석정지 97명(50.8%) △ 공개회의 경고 39명(20.4%) △ 공개회의 사과 31명(16.2%) △ 제명 24명(12.6%)으로 나타났다.
-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,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.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,230만 원(1명당 평균 280만 원)의 의정비가 지급됐다.
-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.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,228만 원(1명당 평균 1,716만 원)의 의정비가 지급됐다.
-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

전부개정규정안

심사보고서

2025. 10. 23.(목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9. 25. 이호건 의원 외 17명 발의 (의안번호 521호)
- 나. 회부일자: 2025. 10. 14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【2025. 10. 21. 상정 · 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호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」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한 규정 및 전자임시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).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2조)
- 나). 전자회의록 공표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여 신설(안 제6조)
- 다). 신설된 조항에 맞추어 기존 조문의 순서 등을 조정
- 라). 그 밖에 『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가)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」 제41조
- 나)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)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- 라). 입법예고: 2025. 9. 30. ~ 2025. 10. 4.(의견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신정경)

가.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

개정항목	주요개정내용	현행규정과의 차이점
안 제2조	회의록을 책자회의록(보존, 비공개)과 전자회의록(전자임시, 전자)으로 구분하고 각 용어를 정의함.	'배부회의록'을 삭제하고 이미 운영 중인 '전자회의록'**에 대한 규정 및 용어 정의를 신설함.
안 제6조	전자회의록을 각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공개 기한을 명시함.	공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. (권익위 권고 핵심 사항)
안 제6조	회의록 원고 완료 즉시 전자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함	임시회의록의 공개 방식을 '전자적 게재'로 구체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함.
안 제4조, 제5조	보존 및 비공개 회의록 열람·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함.	비공개 정보의 유출 방지 및 기밀 유지를 위한 의원의 책임을 강화함.
안 제9조	자구 정정 기준에 "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"를 추가하여 발언 내용의 정밀도를 높임.	기준 정정 범위를 확대함.

나. 총평

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, 운영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기준을 훈령에 명시하고 공개 기한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의회 투명성과 구민 알 권리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안임.

다. 주요 검토 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인 공개 기한을 명확하기 위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 공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, 정보 접근성을 높인 것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핵심 조치임.
또한 이미 시행 중인 전자회의록의 공개 방식과 정의를 훈령에 명문화하여 행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 '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'를 정정 범위에 추가한 것은 발언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. 다만, '유사한 어휘'는 발언의 정치적 취지나 강도를 변경할 소지가 있으므로, 단순한 동의어 또는 관용적 표현으로 치환하여 발언의 논리적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요구됨.

라. 결론

상기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,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구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와 신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